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5,694,125	29,270,824
일반회계	803,234,564	24,097,037
특별회계	172,459,561	5,173,787
공기업특별회계	148,102,024	4,443,061
상수도사업	58,702,678	1,761,080
하수도사업	89,399,346	2,681,980
기타특별회계	24,357,537	730,726
주택사업 특별회계	3,245,130	97,354
교통사업 특별회계	13,278,574	398,35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15,551	27,46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32,490	27,97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003,901	90,117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	43,089	1,293
대지보상 특별회계	2,215,328	66,460
기반시설 특별회계	289,585	8,688
수질개선 특별회계	433,889	13,01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96,70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한도는 5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